



식품의약품안전처
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

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간의 안전한 식품, 건강한 식생활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건강기술 적용제품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(WHO WPRO)
(이하 “양측”으로 칭함)는,

- (1) 안전한 식품(건강한 식생활 포함), 의약품(바이오의약품, 전통의약품 포함), 의료기기 및 건강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중이 이용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함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,
- (2) 평등, 허혜, 상호 이익을 토대로 안전한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건강기술 적용제품의 가용성 및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측 간 장기적인 협력전략을 발전시키기를 바라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:

제 1 항 기본 원칙

양측은 동 MOU에 따라 식품(건강한 식생활 포함), 의약품(바이오의약품, 전통의약품 포함), 의료기기 및 건강기술 적용제품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다.

제 2 항 협력 분야

양 기관은 동 양해각서 의의 구체적인 위임사항(TOR) 또는 적절한 형식에 의해:

- 가. 식품안전, 건강한 식생활 및 의약품(바이오의약품, 전통의약품 포함), 의료기기·기타 건강기술 적용제품의 정책·접근·공급·안전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;
- 나. 공동 심포지엄, 워크숍 및 교육을 개최한다;
- 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또는 지역 내 대표사무소(연락관사무소 포함)에 정규직위 또는 순환직위로 인적자원을 파견하는 데 협력한다;
- 라.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요청에 따라 지역 내 회원국가에게 식품·의약품·건강기술 적용제품 분야의 품질 및 안전사고 또는 현안의 조사를 포함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협력한다.

제 3 항 비용 부담

- 가. 각 측은 동 MOU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.
- 나.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지원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양측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하는 즉이 부담한다.

제 4 항 정보 공개

동 MOU에 따라 진행되는 협력활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한 모든 비밀 정보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허가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다.

제 5 항 이견 해결

동 MOU의 해석 그리고/또는 실행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경우, 양측은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 6 항 유효기간과 종료

- 가. 동 MOU는 서명일에 발효되어 5년간 유효하다. 본 MOU의 종료를 원할 시에는 상대방에 서면으로 6개월 전에 통보한다. 이러한 종료의사 통보가 없으면 추가적인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자동 갱신된다.
- 나. 동 MOU는 양측의 서면 동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.
- 다. 동 MOU의 종료는 합의문 종료 통보 시점에 진행 중인 협력 활동의 지속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
제 7 항 연락관(들)

양측은 동 MOU의 이행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관을 지정한다.

본 약정은 대한민국, 서울에서 2016년 6월 27일에 국문과 영문 두 언어로 서명하였으며, 모든 문구는 동일하게 유효하다. 해석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, 영문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
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여

손 문 기 처장

세계보건기구
서태평양지역 사무처를 대표하여

신 영 수 사무처장